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00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손 솔 · 전종덕 · 전진숙
김종민 · 조계원 · 정혜경
임미애 · 윤종오 · 정춘생
용혜인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는 것임에도,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Treaty-based bodies)에서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그리하여 결국 헌법의 국제법 존중 규정(제6조)에도 위반되고 그 자체로 위 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재판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도 불

충분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바, 얼마 전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제기하여 원고패소 확정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 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1조제1항제12호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1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재심의 소의 제기 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451조 제12호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456조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 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 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1. (생 략) <u><신 설></u>	제451조(재심사유) ① ----- ----- -----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 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 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 (Individual Communications) 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 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